

사은품 · 경품으로 제공되는 전기주전자 · 무선다리미 등 – 안전 관련 주의 · 경고 등 표시 사항 미흡 –

글/박범규(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센터 생활안전팀)

최근 백화점 및 할인점 · 홈쇼핑 등에서 전기주전자나 무선다리미, 등을 소비자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. 이러한 판촉 · 기획용 전기제품은 무상 또는 중 · 저가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데 각종 소비자 불만 및 위해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.

특히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제품에 대한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 예방이 중요시됨에 따라 할인점 · 홈쇼핑 · 인터넷몰 등에서 사은품, 경품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기무선다리미, 전기주전자, 핫플레이트 등 31개 전기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 표시, 사용설명서의 주요 안전 관련 표시 사항 실태를 조사하였다.

사업자는 안전한 제품 제공하고
소비자는 사용설명서 숙지한 뒤 사용

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안전인증 여부 및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시 내용을 조사한 결과, 31개 제품 모두 안전인증 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(또는 형식승인)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1개 제품(3.2%)은 형식승인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새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
7개 제품(22.5%)은 안전인증 마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제품에 각인된 표시가 쉽게 눈에 띄지 않은 채 표시되어 있었다. 6개 제품(19.3%)은 제조 시기를 알 수 있는 제조년월을 표시하지 않는 등 전기용품 표시 규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. 5개 제품



사진은 기사와
무관함

(16.1%)은 제품의 사용설명서 또는 품질보증서가 아예 없거나 외국어로 표기되어 있었으며, 사용설명서 상에 그림표시나 기호 등으로 제공하고 있는 곳은 16개 제품(55.2%)에 불과하였다.

특히 전기제품의 특성상 사용설명서의 안전 관련 주요 표시 내용을 살펴본 결과, 전원 플러그 등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전 또는 화재의 위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것은 29개 제품 중 23개 제품(79.3%)이었다. 제품 사용 중 가열된 열판, 발열체 등에 손을 데이는 화상 주의를 기재한 것은 20개 제품(69%)으로 나타났다.

또한 제품 취급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나 노약자에 대해 취급 주의를 기재한 것은 25개 제품(86.2%)이었으며, 16개 제품(51.6%)은 제품 본체에 화상 주의 등 안전 관련 내용에 대해 아무런 표시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따라서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전기제품의 안전인증 표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기관을 통해 개선 조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. 무엇보다도 제품을 제조 · 수입 · 판매하는 사업자는 판촉 · 기획 제품 제공 시 가격 위주보다는 안전 위주의 제품을 선정토록 함과 아울러 제품 사용설명서의 안전 관련 표시 내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. 소비자는 사용설명서 내용을 숙지한 뒤 제품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는 등 제품으로부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.